

**[붙임1] 수입자용 표준서면질의서(안)**

대한민국 관세청

##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(안)

(수입자 작성용)

본 질의서는 한-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FTA특례법) 제13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
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,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\_\_일 이내이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(단, 한-페루 FTA는 제외).

### 부문 I ▶ 거래자 정보

수입자 현황				
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			업종/업태	
사업장	(본사 주소)			전화
				팩스
				홈페이지
임직원	(공장1 주소)			전화
	(공장2 주소)			전화
	(총원) _____ 명 (관리직) _____ 명	(임원) _____ 명 (생산직) _____ 명	(기타) _____ 명	
원산지업무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전문가 활용(관세사무소, 컨설팅업체, 원산지관리사) 업체명(성명) / ☎ 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활용(성명, / ☎ ),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
	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원산지관리책임자	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? (소속)      (직위)      (성명)      (전화)      (e-mail)			

상대국 수출자 현황 (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체명		해외공급자부호		국가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자		업종/업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	(본사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팩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홈페이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직원	(공장1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공장2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총원) _____ (관리직) _____	명	(임원) (생산직) _____ 명	명	(기타) _____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업무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전문가 활용(관세사무소, 컨설팅업체, 원산지관리사) 업체명(또는 성명) / ☎ 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활용(성명, / ☎ ), 원산지업무경력 0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설비 명칭</th> <th>대수</th> <th>용도</th> <th>설치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설비 명칭	대수	용도	설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
설비 명칭	대수	용도	설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	(소속)	(직위)	(성명)	(전화)	(e-mail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관리책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생산자 현황 (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,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체명		해외공급자부호		국가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자		업종/업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	(본사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팩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홈페이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직원	(공장1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공장2 주소)		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총원) _____ (관리직) _____	명	(임원) (생산직) _____ 명	명	(기타) _____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업무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전문가 활용(관세사무소, 컨설팅업체, 원산지관리사) 업체명(성명) / ☎ 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활용(성명, / ☎ ), 원산지업무경력 0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설비 명칭</th> <th>대수</th> <th>용도</th> <th>설치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설비 명칭	대수	용도	설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
설비 명칭	대수	용도	설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	(소속)	(직위)	(성명)	(전화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원산지관리책임자	(e-mail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부문II ▶ 일반사항

적용협정(해당□에✓ 표시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칠레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싱가포르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FTA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아세안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인도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U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페루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미국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APTA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빈특혜 |

### 1. 검증대상물품

수입신고번호	수입신고일자	
품명	규격	
HS부호	금액	중량 또는 수량
1-1. 수입물품의 품목분류(HS부호)를 어떻게 결정합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자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자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사전회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1-2.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□에 ✓ 표시 후, 사본을 제출바랍니다.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계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공정설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자료명세서(BOM)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설명서		
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사전심사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견본품 (※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)		

### 2. 원산지증명서

2-1.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대국 정부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수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생산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수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
2-2.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·관리하고 있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2-3.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. 협정관세 적용신청

3-1.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? (YYYY/MM/DD)
3-2.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,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-3.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(TRQ)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(추천대상에 포함)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만약 추천받았다면,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□에 ✓ 표시 후 제출 생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산제출

### 4. 운송관계

4-1.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□에 ✓ 표시 후, 사본을 제출바랍니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B/L <input type="checkbox"/> AWB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하목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자료( )
4-2.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(역외국·제3국)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4-3. 상기 4-2 질문에서 '예'를 선택한 경우,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,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입증내용 기재)

4-4. 비당사국에서 하역, 재선적, 포장,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,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?
4-5. 상기 4-4 질문에서 '아니오'를 선택한 경우,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,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작업 내용 기재)

## 부문III ► 원산지 결정 기준

### 5. 공통사항

- 5-1.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
- 5-2.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5-3. 생산시설의 위치(주소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5-4.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?  예  아니오
- 5-5.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(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).  
(제조공정 기재)

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□에 ✓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-미 FTA 협정 제6-19조 제4호 아목(Article 6.19 4 h)에 따라 수입자 증명(인지)이 신청의 기초를 이를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,

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(8.3~8.7 질문)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산지 결정 기준	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,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완전생산기준	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	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번변경기준	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		<input type="checkbox"/> 역내가치기준	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		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공정기준	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### 6. 완전생산기준

- 6-1.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제조과정 기재)

- 6-2.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원재료명	유형	HS부호	공급자	원산지

※ HS부호 :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

유형 :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~h 중 하나를 기재

## 7. 세번변경기준

7-1.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
7-2.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(미소기준).

※ 해당 협정에서 최소(미소)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,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

가격기준인 경우	가격	중량기준인 경우	중량
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	①	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	①
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또는 물품가격 총액	②	구성품의 총 중량	②
미소기준비율=①/②×100%	③	미소기준비율=①/②×100%	③

## 8. 역내가치기준

8-1. 역내가치(RVC) 산정대상 회계기간

8-2.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,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원재료명	HS부호	공급자	원산지	소요량	단가	원재료 가격	
							원산지 원재료	비원산지 원재료
계								

## 필수기재사항 (8.3 ~ 8.7 질문)

8-3. 구매자(수입자)와 판매자(수출자)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.

- |   |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%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: ) |

8-4. 상기 8-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|  |   |   |
|--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방법(실제지급가격 기초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방법(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방법(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4방법(국내판매가격 기초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방법(산정가격 기초)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방법(합리적 기준)       |

8-5.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, 해당 에 ✓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|  |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8-6.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, 해당 에 ✓ 표시하시고,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(가산요소).

- |   |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(구매수수료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,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·인하된 가격으로 직·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후 전매·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항까지의 운임·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|

8-7.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, 해당 에 ✓ 표시하시고,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(공제요소).

- |  |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, 설치, 조립, 정비, 유지, 기술지원비용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항 도착 후 운임·보험료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, 공과금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|

## 9. 가공공정기준

- 9-1.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,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제조공정 기재)

## 10. 대체가능물품

- 10-1.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
- 10-2.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,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?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
 평균법  개별법
- 10-3.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)
- 10-4.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
- 10-5.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,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?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
 평균법  개별법
- 10-6.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)

## 부문IV ► 책임자 서명·확인

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업체명	작성일자
대표자 직함	성명
책임자 직위	성명

## 세관 기재 사항

세관명	부서
직급	성명

### 【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】

※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,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

##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

연번	서류명	관련 질문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
16		
17		
18		
19		
20		

##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

1.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,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2.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3.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근거 : FTA특례법, FTA특례법시행령, 각 협정

협정(법령)별	근거조항	보관대상자료
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	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증명서(전자문서 포함) 사본</li> <li>● 수입신고필증</li> <li>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</li> <li>●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</li> <li>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</li> <li>●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</li> <li>●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 증빙서류(사전심사서 교부받은 경우)</li> </ul>
한-칠레	제5.3조 제3항, 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신고</li> <li>●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문서</li> <li>● 원산지증명서 사본</li> </ul>
한-싱가포르	제5.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상품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(전자기록포함)</li> <li>● 원산지증명서 사본(전자기록포함)</li> </ul>
한-EFTA	부속서 I 21조 2항, 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(전자기록 포함)</li> </ul>
한-아세안	부록1 규칙 13조 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수입관련 기록</li> </ul>
한-인도	제4.10조 제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증명서 사본</li> <li>● 일체의 관련 수입서류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디지털·전자·광학·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,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</p>
한-EU	제23조 제2항, 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기록(전자기록포함가능)</li> </ul>
한-페루	제4.6조 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증명서 사본</li> <li>● 수입과 관련된 기록</li> </ul>
한-미	제6.17조 제2항 제6.17조 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</li> <li>●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</li> <li>● 제6.13조(통관 및 환적)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관련 기록</li> </ul>

4.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물품, 원자료 등의 가격(금액)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본선인도조건(FOB), 공장인도조건(EXW), 조정가격, 순원가 등을 미화(USD) 환산한 가격(금액)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예) kg, u kg, 2u, m kg, m<sup>2</sup> kg, m<sup>3</sup> kg, ℓ kg, MW 등

7.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6-2 질문 관련).

구분	유형	상세 내용
광물성 생산품	a	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
식물성 생산품	b	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·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
산동물 및 관련 물품	c	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
수렵·어로·양식 생산품	d	당사국 영역에서 수렵·덫사냥·어로·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
영해밖 획득물, 해저물품	e	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
우주에서 취득한 물품	f	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
폐기물, 재생품	g	당사자내에서 생산·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, 부스러기,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
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	h	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

※ 영역, 산물의 세부적인 구분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8. 한-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.18조 및 제6.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.

## 【붙임2】 수출자·생산자용 표준서면질의서(안)

대한민국 관세청

###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(안)

(수출자·생산자 작성용)

본 질의서는 한-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FTA특례법)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
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,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\_\_일 이내이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(단, 한-칠레 FTA는 제외).

#### 부문 I ▶ 거래자 정보

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 에 √ 표시 후,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거래자 유형	유형별 설명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자	검증대상물을 수출한 자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자/생산자	검증대상물을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물품 생산자	검증대상물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자료 생산자	검증대상물을 원자료를 생산한 자				
업체명 대표자		해외공급자부호 업종/업태	국가명		
사업장	(본사 주소)	전화			
		팩스			
		홈페이지			
(공장1 주소)	전화				
(공장2 주소)	전화				
임직원 (총원) _____ 명 (관리직) _____ 명	(임원) _____ 명 (생산직) _____ 명	(기타) _____ 명			
원산지업무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전문가 활용(관세사무소, 컨설팅업체, 원산지관리사) 업체명(성명) / ☎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활용(성명, / ☎), 원산지업무경력 0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원산지관리체제	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
	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
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	설비 명칭	대수	용도	설치장소	
원산지관리책임자	(소속)	(직위)	(성명)	(전화)	(e-mail)

## 부문II ▶ 일반사항

적용협정(해당 에 ✓ 표시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칠레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싱가포르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FTA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아세안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인도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U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페루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미국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APTA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빈특혜 |

### 1. 검증대상물품

수출신고번호		수출신고일자	
품명		규격	
HS부호		금액	중량 또는 수량

1-1. 수출물품의 품목분류(HS부호)를 어떻게 결정합니까?  자체결정  관세사자문  
 관세청사전회시  기타( )

1-2.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✓ 표시 후, 사본을 제출바랍니다.

거래계약서  제조공정설명서  원재료명세서(BOM)  용도설명서

견본품 (※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)

### 2. 원산지증명서

2-1.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?  정부기관( )  수출자  생산자  
 상대국수입자  기타( )

2-2.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·관리하고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  모름

2-3.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·관리하고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  모름

2-4.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✓ 표시 후,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.

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 
(제3국 발행 송품장 포함)  원산지소명서

원산지확인서류  기타( )  
(※ 원산지(포괄)확인서, 국내제조확인서, 수입신고필증 등)

### 3. 운송관계

3-1.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✓ 표시 후, 사본을 제출바랍니다.

B/L  AWB  적하목록  기타자료( )

3-2.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(역외국·제3국)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?  예  아니오

3-3. 상기 3-2 질문에서 '예'를 선택한 경우,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,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입증내용 기재)

3-4. 비당사국에서 하역, 재선적, 포장,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,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 예  아니오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?

3-5. 상기 3-4 질문에서 '아니오'를 선택한 경우,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,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작업 내용 기재)

## 부문III ► 원산지 결정 기준

### 4. 공통사항

- 4-1.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 예  아니오
- 4-2.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?  예  아니오
- 4-3.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4-4. 생산시설의 위치(주소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4-5.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-6.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제조공정 기재)

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□에 √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산지 결정 기준	<input type="checkbox"/> 완전생산기준	5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	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,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.
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번변경기준	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역내가치기준	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	
	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공정기준	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	

### 5. 완전생산기준

- 5-1.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제조과정 기재)

- 5-2. 검증대상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원자료명	유형	HS부호	공급자	원산지

※ HS부호 :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

유형 : 불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~h 중 하나를 기재

## 6. 세번변경기준

6-1.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
6-2.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(미소기준).  
※ 해당 협정이나 차수(미수)기준, 시정방법의 기준기준인 경우 기준기준에 증명기준인 경우 증명기준에 기재

※ 해당 협정에서 최소(미소)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,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

가격기준인 경우	가격	중량기준인 경우	중량
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	①	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	①
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또는 물품가격 총액	②	구성품의 총 중량	②
미소기준비율=①/②×100(%)	③	미소기준비율=①/②×100(%)	③

#### 7. 역내가치(RVC)기준

#### 7-1. 역내가치(RVC) 산정대상 회계기간

7-2.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8. 가공공정기준

8-1.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,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(제조공정 기재)

## 9. 대체가능물품

9-1.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?

예       아니오

9-2.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,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?

## □ 선입선출법

## □ 후입선출법

9-3 대체 가능한 물풀이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(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)

9-4.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

예

아니오

9-5.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,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?

## □ 선입선출법

## □ 후입선출법

9-6 대체 가는 윈재료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)

## 부문IV ► 책임자 서명·확인

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업체명	작성일자	
대표자 직함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
책임자 직위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

## 세관 기재 사항

세관명	부서
직급	성명

### 【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】

※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,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

##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

연번	서류명	관련 질문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
16		
17		
18		
19		
20		

##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

1.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,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2.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3. 수출자 및 생산자는 다음의 수출신고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근거 : FTA특례법, FTA특례법시행령, 각 협정의 자료보관의무규정

협정(법령)별	근거조항	보관대상자료
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	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증명서(전자문서 포함) 사본</li> <li>● 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</li> <li>● 수출신고필증</li> <li>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</li> <li>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</li> <li>●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</li> <li>● 원가계산서</li> <li>● 원재료내역서</li> <li>● 공정명세서</li> <li>●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 관리대장</li> <li>●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</li> <li>● 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,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</li> </ul>
한-칠레	제5.4조 제5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특혜관세대우가 요구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다음을 포함한 모든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구입, 비용,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기록</li> <li>●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입, 비용, 가격, 지불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</li> <li>● 원산지증명서 또는 신고서</li> </ul>
한-싱가포르	제5.5조 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구매, 비용, 가격, 선적, 지불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처, 구매, 비용, 가격 및 지불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</li> </ul>
한-EFTA	부속서 I 제21조 제1항 부속서 I 제21조 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신고서와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사본</li> <li>● 전자기록을 포함</li> </ul>
한-아세안	부록1 규칙13조 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기록</li> </ul>
한-인도	제4.10조 제1항 제4.10조 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</li> <li>● 디지털·전자·광학·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,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</li> </ul>

협정(법령)별	근거조항	보관대상자료
한-EU	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16조 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한 서류</li> <li>●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</li> <li>●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음</li> </ul>
한-페루	제4.6조 제1항 제4.6조 제2항 제4.6조 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구매, 비용,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, 비용,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</li> <li>●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</li> <li>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</li> <li>● 디지털, 전자, 광학,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,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기록보관 방법 선택</li> </ul>
한-미	제6.17조 제1항 제6.17조 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구매·비용·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</li> <li>●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,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·비용·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</li> <li>●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</li> <li>●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</li> <li>● 디지털·전자·광학·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,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방법 선택</li> </ul>

4.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물품, 원재료 등의 가격(금액)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본선인도조건(FOB), 공장인도조건(EXW), 조정가격, 순원가 등을 미화(USD) 환산한 가격(금액)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예) kg, u kg, 2u, m kg, m<sup>2</sup> kg, m<sup>3</sup> kg, ℓ kg, MW 등

구분	유형	상세 내용
광물성 생산품	a	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
식물성 생산품	b	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·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
산동물 및 관련 물품	c	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
수렵·어로·양식 생산품	d	당사국 영역에서 수렵·덫사냥·어로·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
영해밖 획득물, 해저물품	e	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
우주에서 취득한 물품	f	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
폐기물, 재생품	g	당사자내에서 생산·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, 부스러기,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
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	h	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

※ 영역, 산물의 종류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8. 한-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.18조 및 제6.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.